2013년 8월 8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월8일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소상공인정책과 • 과장 : 이인섭 (042-481-4408) • 사업조정팀장 : 정원탁 (042-481-3992)
주무관 임호순(042-481-3993)

(주)이마트, 갈등 끝에 아름다운 상생

– 트레이더스 서면점 , 부산지역 중소상인과 상생 –

□ **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** 및 **행정소송** 등으로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던 **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**이 드디어 **완료**되었다.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(회장 이정식)가 신청한 ㈜**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**이 양측의 **자율협의로 상생안을 마련**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중소기업청에서 **자율조정회의 및 당사자간 개별면담** 등을 통해 당사자간의 거리차를 좁히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, **사업조정 기간의 종료를 불과 17일 앞두고** 양 당사자가 한 발씩 양보하는 **상생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간 합의**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.

□ **양측이 합의한 상생안**은 다음과 같다.

① **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,**

② **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을 대량구매하는 특정 고객에게 매장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으며,**

③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의 납품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.

○ 이로 인해,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기존의 이마트와 같이 **소매업 중심으로 점포를 운영**할 예정이며 **부산지역 소재 중소업체의 납품기회를 확대**함으로써,

○ 부산지역 **중소 도매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**하고 **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**하기로 하였다.

□ 사실 이번 사업조정은 **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**을 거쳐 왔다. ㈜이마트측에서 중소기업청이 통보한 **'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'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**한 것이다..

○ 이에 대해 1심(서울행정법원)에서는 **"트레이더스 서면점 개점은 사업을 계속·유지하는 행위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중소도매상인들에게 현저한 피해가 없다"**며 **㈜이마트가 승소**함에 따라,

○ 기존 대형마트가 **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전환하여 사업이 확장한 경우에도 사업조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**에 이르게 되었다. 이에 대해, 중소기업청에서는 **"이번 판결이후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중소 도매상인들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된다"며 항소**를 하였고,

○ 2심(서울고등법원)에서 "**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사업조정 제도의 중간절차**로서 최종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"며 "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중기청이 소속 사업조정심의회의 최초 심의결과를 통지한 것이므로 **행정처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**"고 하여 **1심을 뒤엎고 중소기업청의 손을 들어줬다.**

○ 이후 중소기업청에서는 **정상적인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**하기 위해 **자율조정회의를 신속하게 개최**하고, **양 당사자와의 개별 면담**을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고 **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**할 수 있었던 것이다.

□ 이번 사업조정건은 당초 대기업측이 **사업조정제도를 불인정**하고 **행정소송을 제기**함에 따라 자칫 **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 것으로 우려**가 되었으나,

○ 양측의 적극적인 상생의지를 이끌어냄으로써 **행정소송으로 인한 양측의 감정적인 대립을 해소**하고, 상생법의 입법취지를 성실히 이행한 대기업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**상생안을 마련한 오히려 좋은 선례로 남게 되었다.**

○ 또한, 대기업들의 신규매장 출점이 어려워지자 **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확장**할 경우 **사업조정제도를 통해 해결**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.

□ 중소기업청 정원탁 사업조정팀장은 “이번 사업조정으로 **창고형 할인매장의 전환이후 사업이 확장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**되어 **중소 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**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”며

○ “향후 대기업은 **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지양**하고, **중소상인과의 상생문화가 정착하기를 희망**한다”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정원탁 사업조정팀장(☎ 042-481-39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>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 행송소송 개요

□ 소송 개요

○ 사 건 명 : 사업조정 개시결정 취소

○ 원고(피항소인) : ㈜이마트 ○ 피고(항소인) : 중소기업청장

○ 청구취지

- 이마트(대형마트)가 **트레이더스(창고형 할인매장)로 전환**한 것은 사업의 개시·확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**사업조정 대상이 아님**

□ 1심 재판결과 : 이마트 승소

○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**사업의 개시·확장으로 볼 수 없고,** 신청인들(도매업)의 피해가 없으므로 **사업조정 개시결정을 "취소"한다.**

□ 중소기업청 항소

○ 이마트는 1심 승소로 기존 매장을 **창고형 매장으로 확대**할 것이고, 인근 **중소 도매사업자 피해는 더욱 심각**할 것이며, 동 건은 **사업조정 대상에 포함**됨

□ 2심 재판결과 : 중소기업청 승소

○ 제1심의 **피고 패소부분의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**하므로 이를 **'취소'**한다.

□ 승소에 따른 기대효과

○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타 **소송에 직접적 영향**

○ 향후 동 건과 **유사한 소송을 준비중인 대기업에 파급효과**

○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**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** 기반 마련